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4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김정태, 김경우, 김제리,
김희걸, 박순규, 양민규,
이광호, 이성배, 이호대,
임종국, 정재웅, 채인묵,
최웅식 의원(13명)

1. 제안이유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된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유치에 관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금융산업 종사자, 혁신금융서비스 종사자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 추가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제4호, 같은 조제5호)
- 나.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
- 다.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란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
5.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제1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을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표창)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
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
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
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
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
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
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
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

<신 설>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생략)

<신 설>

제18조(행정지원 등) (생략)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0조(표창)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지원 등)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2조(시행규칙) (현행 제1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 제15조제3호 및 제4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예산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단위 : 백만원)

조문	사업명	2020년 예산액
제15조제3호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910
제15조제4호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290
제16조제2항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2,500
제17조제1항제1호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조성 및 운영	1,251
제17조제1항제2호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조성 및 운영	800
제17조제1항제3호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910

-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는 현재 서울핀테크랩 운영사무를 케이액셀러레이터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중임
- ※ 제20조(표창)는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 수여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9,000천원(연평균 19,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9,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17조제1항제1호(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제2호(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제3호(서울핀테크랩) 등 3개 시설별로 10명(담당과장 1명, 민간위원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회(정기 2회, 임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9,000천원(연평균 19,800천원)
- 총비용 = 3개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제4항)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소계(b)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 총 비용(b-a)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81,000천원+업무추진경비 18,000천원=99,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9명×연 4회×3개 시설×5년=81,000천원
-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담당 과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0명×연 4회×3개 시설×5년=18,000천원
-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